

의안번호	2201460
의 퇴 인	서명옥의원
회 답 일	2024.07.31.
추계번호	24C18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u>전부 또는 일부</u> 를 지원할 수 있음 ※ 법률 제20214호(2025.2.7. 시행예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의2조 (국가 등의 책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	

2. 상세 사유

□ 국가 등의 책임(안 제2조의2)

-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선언적·권고적 조문으로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계산하기 어려움
 -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사업에 2024년 기준 11억 500만원을 배정하여 약물 및 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 14개소를 설치하고 재활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2024년 4월~)할 계획을 밝힘¹⁾
- 개정안에 따른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명문화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를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안 제40조)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참고로, 개정안은 법률 제20214호(2025.02.07. 시행예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제20214호 제40조제2항은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²⁾을 명시하고 있음³⁾
 - 2024년 현재 국립정신병원 5개소와 시·도 지정 20개소 등 총 25개소의 치료보호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표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울산	마더스병원		신세계 병원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마음사랑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계요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대구대동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양산병원
	참사랑병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제주	연강병원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1)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설명자료는 부록 참조

2) 제40조제2항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보건복지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제20214호 제40조제2항은 당시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시설과 인력기준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음

- 개정안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추가 시설 및 장비 목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따른 추가재정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2024년 기준 치료보호기관 운영비로 9개소에 각 1억원 씩 9억원, 우수 치료보호기관 지원비(성과보상비)로 2개소에 3억원,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지원비로 5억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25개 치료보호기관은 법률 제20214호 제40조제2항제1호~3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동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시설 및 장비목록이 추가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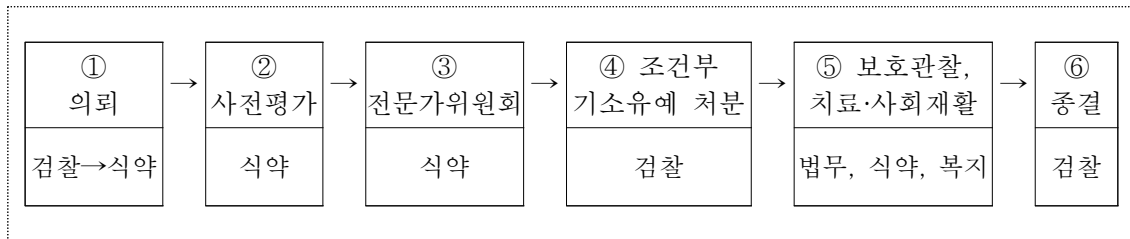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부록]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 개요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회복 지원 및 재범 방지에 기여 목적
-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 평가 후 맞춤형 치료·재활 부여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24.4월~)

[부표 1]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단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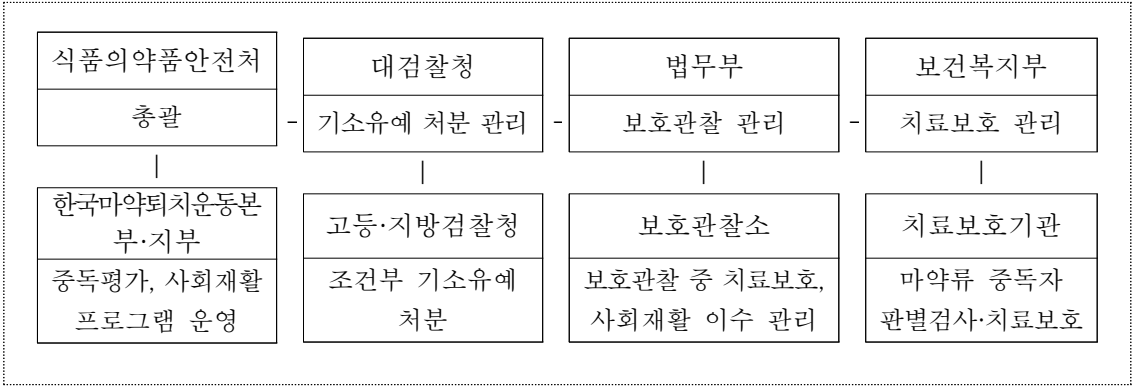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 추진체계

- (식약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관리 총괄,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마퇴본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검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운영, 기소유예자 판단, 중독평가 의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 (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유예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모니터링, 수시 약물검사 실시
- (복지부) 치료보호제도 운영·관리(치료보호심사위원회 포함), 치료연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표 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추진체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